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- 66호

# - 2025년도 제4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-

# 최 종 합 격 자 공 고

2025년도 제4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5일

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 최종합격자 : 1명

### ▣ 수 의(수 의) 1명

경북도 42400001 - 이상 1명 -

김천시 -합격자 없음-

안동시 -합격자 없음-

영천시 -합격자 없음-

상주시 -합격자 없음-

경산시 -합격자 없음-

청송군 -합격자 없음-

성주군 -합격자 없음-

예천군 -합격자 없음-

봉화군 -합격자 없음-

울진군 -합격자 없음-

## 2 임용후보자 등록

가. 기　　간 : 2025. 10. 22.(수) [1일간]

나. 장　　소 :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〔연락처 별첨〕

다. 등록방법

○ 최종합격자는 위 기간 중 제출서류를 갖추어 임용예정기관 인사부서에 **직접 방문하여 임용후보자 등록**을 하여야 합니다.

○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일(2025. 10. 15.)로부터 15일 이내(2025. 10. 30.)의 기간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라. 등록(제출) 서류

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(임용예정기관에 비치 / **[붙임1]** 참조)

②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2025. 10. 15. 이후 발급분)

**※ 일반/상세/특정증명서 중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상세증명서 제출**

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2025. 10. 15. 이후 발급분)

④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**※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 제출**

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(**[붙임2]** 참조)

**※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공무원용으로 발급하며, 검사 시 사진 2매 필요(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)**

**※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재발급하여 제출 가능**

⑥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

⑦ 경력증명서 1부(공무원 경력합산에 유효한 경력 / 해당자에 한함)

⑧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(원본 지참/ 해당자에 한함)

⑨ 사진 5매

- 사진 규격(3.0cm × 4.0cm) 4매
- 사진 규격(5.0cm × 7.0cm) 1매

## 3 유의사항

가.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## 4 기타사항

가. 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(서류작성 등)과 임용시기 등 향후 일정에 관하여는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＊ 임용예정기관(도, 시·군) 인사담당부서 연락처 ＊**

| 기관명 | 전화번호 |
|---|---|
| 경북도 | 054-880-2848 |

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(☎ 054-880-4582)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(https://www.gb.go.kr) 시험정보-질의/응답(Q&A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**[붙임1]**

[별지 제4호서식]

# 임용후보자등록원서(원본)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※등록번호 | 제 회 번 | | ③ 응시연도 및 회수 | ( )년도 제 회 | |
| ※ 급 | 직 | | 응시지구(기호) 응시번호 | 지구 | 번 |
| | | | 직급별 | 급 직 |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① 성 명 | (한글) | ② 희망지역 | | ※ 등록심사 | |
| | (한문) | 제1지역 | 시 군 | 사진대조 | 서류심사 |
| | (영문) | 제2지역 | 시 군 | ㊞ | ㊞ |
| ④ 주 소 | | | | (사진부착) | |
| ⑤ 연락처 | 전화번호 : | | | | |
| | 휴대폰 : | | | | |
| ⑥ 병 역 | ○ 병역필 / ○ 면제 / ○ 미필 / ○ 여성 | | | | |

⑦ 학 력

| 부터 | 까지 | 학 력 | 전공·부문·과목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| ⑧ 자격면허 | | ⑨ 상 벌 | |
|---|---|---|---|
| 연 월 일 | 종 별 | 연 월 일 | 사 항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⑩ 경 력

| 부터 | 까지 | 경 력 사 항 | 발령청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## (※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)

⑪ 비상연락처

| 관계 | 성 명 | 연락처 |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| | | | |

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,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,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출원자 (인)

(임용권자) 귀하

**[붙임2]**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#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① 구 분 | ② 시험실시기관 | ③ 응시직명 | ④ 응시번호 | ⑤ 성 명 | | 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⑥ 검사 시 | | | | | | |
| ⑦ 재사용 | | | | ⑧ 주민등록번호 | | |

## 검 사 내 용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키 | cm | | 체 중 | kg | |
| 허리둘레 | cm | | 혈 압 | | |
| (교정)시력 | 좌: ( ) 우: ( ) | 색 신 (색 각) | | (교정)청력 | 좌: ( ) 우: ( ) |
| 종 양 질 환 | | | 이비인후질환 | | |
| 호 흡 기 질 환 | | | 심 혈 관 질 환 | | |
| 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 | | | 신장/비뇨기계질환 | | |
| 내 분 비 질 환 | | | 혈 액 질 환 | | |
| 신 경 질 환 | | | 피 부 질 환 | | |
| 근골격계 질환 | | | 안 질 환 | | |
| 정 신 질 환 | | | 흉부X선 검사 | | |
| 기 타 | | | | | |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| 검사 결과 합격 여부 | [ ]합 격 [ ]판 정 보 류 | 합격 사유 | |
|---|---|---|---|
| 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 | 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| | |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| 유효기간 | 판정일부터 1년 |
|---|---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**[응시자]**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*[검진기관]**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“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”라고 적습니다.
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